

2023년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 공모안내서 [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]

2022. 11. 8.

목 차

I. 사업개요	1
II. 사업 세부내용	2
III. 선정평가 절차	5
IV 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	7
V. 사업 추진일정	8
VI. 행정사항	9

[붙임]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 성과지표 안내

I 사업 개요

□ 목적

- 융합연구가 가능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기초의학, 자연과학, 공학 등 타 학문의 교육 및 연구 지원
 - 임상 지식과 타 학문이 융합된 의과학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,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
- 융복합 연구결과를 활용해 질병치료 및 신약·의료기기 개발에 기여

□ 추진 전략

비전

국가 바이오-메디컬 산업 혁신성장 촉진

목표

바이오-메디컬 산업을 견인할
융합형 의사과학자(M.D.-Ph.D.) 양성

세부 추진사업

① 전공의 연구 지원

전공의들에게 연구 방법 교육 및
연구 참여기회 제공으로
의사과학자로의 진출 지원

②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

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
교육프로그램 개발 및
의사과학자 정착, 연구 활성화 등을
위한 방안 마련

③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

기초의과학·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을 지원하여 융합형
의사과학자 양성

④ 학부 의과학자 양성 지원

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이공계 전공 지식과 의학 지식 간 융합 교육·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
의과학자 양성 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바이오헬스 인재 수요 대응

□ 사업내용

- (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) 기초의학·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연구비 지원

□ 지원대상

-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전일제 박사(또는 석·박사 통합) 학위 과정 재학 중 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(전문의 여부 무관)

※ 지원 시작 기준 학위 과정이 박사과정 6학기, 석·박사 통합과정(박사과정에 준하는 경우) 8학기 이내 재학 중인 경우 신청 가능

※ 단, 기초의학 전공자는 석·박사 통합과정의 석사과정에 준하는 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하되, 이는 전문의 과정이 없는 기초의학교실 소속에 한함

- 최소 2년(4학기) 이상 사업 참여 필수
- 자연과학대학·공과대학·과학기술원 등 융복합대학원에서 지원 시 우대
-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'전공의 연구지원' 1년(2학기) 이상 참여자는 선정평가의 최종 점수 산출 후 가산점 2점 부여
- 신청제한 : 전공의 수련과목과 동일한 전공과목 선택 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※ (예) 예방의학 전공자는 예방의학 박사 전공 선택 불가, 병리학 전공자는 병리학 박사과정 전공 선택 불가(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)

□ 지원분야

- 임상의학을 제외한 기초의학*, 자연과학, 공학 분야 등의 박사 학위 과정 지원

* 기초의학 전공자는 석·박 통합 과정의 석사과정부터 지원 가능

□ 운영방식

- 선발된 지원대상자가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을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협약 및 관리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구 분	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
지원규모	1인당 75백만원/년
국고보조금	1인당 50백만원/년
기관부담금	1인당 25백만원/년
지원기간	지원기간 (최대 4년) * 최소 2년(4학기) 이상 참여 필수 ** 석·박사통합과정의 기초의학 전공자는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최대 6년 이내 지원

- ※ 매년 지원기간·예산 등은 예산 변동이나 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- ※ 국고보조금과 기관부담금은 반드시 2:1 매칭을 준수하여야 함
 - * 기관부담금 연간 최소 25백만원 이상 매칭(기관부담금 초과 매칭 가능,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 50백만원/년은 변동 없음)
- ※ 연간 장학금 및 인건비 총액은 5천만원(연간 기준) 이하로 예산 편성 가능 (국고보조금 및 기관부담금 포함)

□ 특기사항

- 매년 지원기간·예산 등은 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직접비 재원으로 기관부담금 매칭 불가
 - ※ 병원 또는 기업에서 해당 사업비 직접 매칭 불가(단, 기관 재원으로 확보 후 매칭 가능)
- 동 사업과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
 - ※ 참여기간이 한시적으로 겹치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(지원사업 협약 개시일 기준)
 - ※ (예) (보건복지부) 신진 의사과학자 연구지원 사업,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등

□ 성과지표

○ (성과지표) 관련 연구 분야의 SCI(E)급 논문(주저자) 또는 특허 출원 1편 이상

- 특허 등록 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해 인정
- 단독 특허인 경우 1편으로 인정, 공동특허는 $1/n$ 편*으로 인정

* 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, 계산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
□ 평가개요

○ 평가목적

-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출한 대상 선정

○ 평가절차

- 구두평가 실시 : 연구계획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구분	평가 내용	수행 주체
신청·접수	○ 연구계획서 등 서류 제출 ※ 제출된 서류 검토 시, 구비서류 미비 및 자격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취소될 수 있음	한국보건산업진흥원
↓		
평가실시	○ 연구계획 구두평가	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평가위원회
↓		
최종 선정	○ 선정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※ 연구계획, 추진일정 및 예산 등 최종수정	한국보건산업진흥원
↓		
계약체결 및 사업실시	○ 한국보건산업진흥원 - 대학* 협약체결 * 선정된 학생이 소속된 대학	한국보건산업진흥원, 지원자 소속대학

※ 향후 전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

※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

□ 평가원칙

-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(이하 ‘관리지침’),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평가결과 종합방식에 의거하여 구두평가*를 실시함

- *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후 점수의 산술평균 및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최종 점수 산출
 - 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
- * 동점자가 있는 경우,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포함하여 결정
 - 필요 시,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순위 결정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 (배점)	평가 내용
연구계획 (40)	▶ 연구내용의 적합성(15) · 연구 주제 및 목표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목표와 부합한 내용인가?
	▶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(10) · 연구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
	▶ 연구내용의 창의성(10) · 연구 방법, 연구 내용에 연구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어 있는가?
	▶ 추진일정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(5) · 연구목표(최종, 당해)는 적절한가? · 연구 추진전략 및 연차별 세부추진 체계는 적절한가?
수행역량 (40)	▶ 지원대상자의 역량(30) · 지원대상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(임상 및 기초의학 지식, 연구수행 경험 등) 및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? · 지원대상자는 연구내용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? · 지원대상자는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?
	▶ 지도교수의 역량 및 지원의지(10) ·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위한 관련 실적 및 경험(관련분야 연구성과, 인재양성 등)은 우수한가? · 지도교수의 모니터링 및 멘토링 계획과 의지는 충분한가?
기대성과 (20)	▶ 연구성과의 기대가능성(10) · 사업종료 후 바이오메디컬 우수성과 도출과 후속연구 연계가 기대되는가?
	▶ 융복합 전문가로의 성장가능성(10) · 융복합 의과학분야 연구자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?

IV

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

□ 제출서류

- 연구계획서(날인된 원본 1부 및 한글파일)

※ 선정평가 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

□ 제출기한 및 방법

- 제출기한 : 2023년 1월 13일(금), 15:00 까지(신청마감 일정 및 시간 엄수)

※ 마감일 1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완료 처리됨

- 제출방법 : 연구계획서 원본은 우편(등기) 또는 직접제출(방문), 연구계획서 한글 파일은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

- 제출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산업인력육성팀

□ 관련 문의

- 사업담당자 : 신민선 연구원, 043-713-8422, mediscientist@khidi.or.kr

□ 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

- 사업공고(10월중) 및 신청서 제출(~'23.1.13일 15시 마감)
-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 선정평가
 - '23년 1월 31일 ~ 2월 1일, 양일간 또는 하루 예정
 - * 평가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, 지원자 대상 평가일정 별도 공지 예정
- 선정평가 결과 공고 및 협약('23.2월 중)
 - * 협약개시일은 '23.3월 예정이며, 기관의 협약서류 제출 완료 후 사업비 교부에 2주 내외 기간 소요
 - * 결과 통보 시 협약 체결 서류 안내 예정이며, 2주 이내 제출이 요구됨
- 선정자 및 소속대학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최('23.3~4월 중)
 - 사업 수행 시 필요사항, 예산 집행 기준 및 지원금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
- 사업 중간점검('23년 8월)
- 성과교류회(매년 11월말~12월초) 및 중간평가(사업수행 1년 도래 시)
 - * 중간평가는 매년 연구계획에 따른 수행 결과 및 차년도 연구계획을 평가함
- 연도별 회계정산보고서 제출(매년 3월~4월)
 - 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사전에 별도 공지 예정

□ 수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

- (수정계획서) 선정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
- (연구계획 변경)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
- (사업결과보고서) 지원대상자는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

※ 본 사업은 융합형 의사과학자양성 운영지침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하며,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근거함

□ 예산편성 및 집행

- (사업비 교부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(2회 이상)
- (사업비 정산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(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기관)에 의뢰하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, 정산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, 집행 잔액 및 발생한 이자, 불인정 금액은 e-나라도움을 사용하여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직접 반납

※ 정산 수수료는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편성함

- (사업비 집행) 사업비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

※ 변경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승인받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비교란에 이를 기록함

□ 사업종료 시점의 지원사업 참여자별 성과지표

- (성과지표) 관련 연구 분야의 SCI(E)급 논문(주저자) 또는 특허 출원 1편 이상
 - 특허 등록 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해 인정
 - 단독 특허인 경우 1편으로 인정, 공동특허는 1/n편*으로 인정
 - * 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, 계산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- (논문 세부기준) 사사 병기 가능
 - “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사업” 문구를 포함한 사사 명시 필요

[논문 사사 표기내용]

국문 표기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.”

영문 표기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MD-Phd/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(KHIDI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.”

- (특허 세부기준) 특허출원확인서, 등록증, 특허공보 등 증빙 제출
 - 특허 출원 후 기술 이전 등 라이선싱은 연구자 소유로 별도 제약사항은 없음
 - 평가위원회에서 특허 성과와 연구계획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사업 성과로 인정 여부 결정
 - *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,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
- 성과지표는 지원사업 종료 시점 최종평가의 평가대상이며, 지표 달성 여부 등 세부 평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함
 - 성과지표 미달성,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학위 미취득 시 국고보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될 수 있으며,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동 사업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